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5일)
------	-----	----------------

신청인 (이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최종 이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소재지	
	⑥자격취득일 (입사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마지막 일한 날)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 사유	

⑨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 직 :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 사업(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업자·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 취직 (취직내용:) [] 사업 (사업내용:) [] 아니오
⑩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기재함	[] 예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⑪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예 [] 아니오
⑫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입니까?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⑬ 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⑭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⑮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간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예 (10일 미만) [] 아니오 (10일 이상)
⑯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의료·주거·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예 [] 아니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결 재	담당		팀 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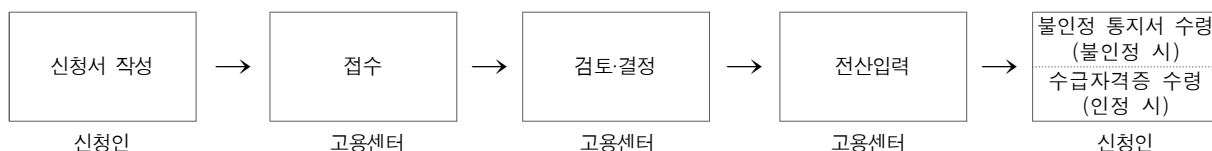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